

【부 령】

- 교육부령제95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 고용노동부령제152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

【고 시】

- 국방부고시제2016-88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12
- 국방부고시제2016-89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8
-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2호(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25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8호(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25
- 환경부고시제2016-67호(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31
- 환경부고시제2016-68호(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32
-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9호(청소년유해매체물)..... 34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해제>, 접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41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5호(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중정정) 49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8호(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 개정)..... 49
- 산림청고시제2016-32호(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50
- 국립무형유산원고시제2016-1호(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50
- 국립무형유산원고시제2016-2호(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53
- 국립무형유산원고시제2016-3호(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59
- 국립무형유산원고시제2016-4호(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63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2호(국적상실)..... 67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국적상실)..... 6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1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7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1호(하천점용 허가)..... 7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2호(도로구역결정<변경>) 73

(이면 계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3호(지형도면<변경>)	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4호(지형도면<변경>)	7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5호(도로구역결정<변경>)	7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6호(도로구역결정<변경>)	7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7호(하천점용 허가)	7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8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8호(접도구역 지정)	8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1호(도로구역결정<변경>)	81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6-13호(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변경)	82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6-14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8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0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9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9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호(항로표지 현황변경)	9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항로표지 현황변경)	9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6호(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9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호(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92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2호(공시송달)	93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0호(제98차 세무사징계의결내용)	94
○법무부공고제2016-56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법무부공고제2016-57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01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95호(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환경부공고제2016-242호(2016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99
○여성가족부공고제2016-74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0호(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1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1호(신기술지정 신청)	1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3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4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8호(신기술지정 신청)	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47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4
○병무청공고제2016-19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105
○농촌진흥청공고제2016-10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산림청공고제2016-56호(산림청종자분쟁조정협의회운영세칙 제정<안> 입안예고)	143
○산림청공고제2016-5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4
○산림청공고제2016-58호(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46

가.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시·도지사가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전체 혁신도시에서 통일적 업무수
행을 위하여 별지양식으로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규정

나.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도 표준화하여 별지에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
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지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y1982@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전화 : 044-201-44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스페이스인코, ②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

나. 전화번호 : ① 02-3439-0409, ② 02-738-1130

2. 명칭 : 고반사 PET필름을 라미네이팅한 PVC시트에 반택이음 구조를 적용한 저온열풍 3중 접합
조립식 옥상방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건축물 옥상 노출방수의 내구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건식재료를 활용한 시
공환경 개선, 폐기물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방수층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접합
부에 반택이음을 도입하여 시트 겹침에 의한 단차형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접합부를 3중으로 접
합하여 방수층의 수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콘크리트 바탕에 대한 방수층의 고정에 있어
서는 비경화형 바탕고정 패치의 적용으로 시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핫멜
트 마감테이프를 적용한 저온 용착공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벽체시공에 있어서는 벨크로 고정방식을
활용한 벽체탈기 시스템으로 탈기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조립식 옥상방수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방수 시트 양단에 반턱이음 구조를 구성하고 접합부를 3중 접합(자가 치유성 테이프 2회 및 저온 열융착 핫멜트 테이프)하며 비경화형 바탕 고정 패치를 이용하여 방수 시트를 고정하고 벨크로 고정방식을 활용한 벽체탈기 시스템을 적용하며 방수 시트 상부에는 고반사 PET 필름을 라미네이팅하여 차열 성능을 부여한 옥상 노출 방수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4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과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 검색 제도 개선 및 법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보안검색의 품질 제고와 경비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경비·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1)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선박"이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으로 약칭을 삭제하고,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
 - 2) '국제항해선박'은 제2조(정의)제1호에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정의하여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항행구역을 나타내는 용어이나, 제3조(적용범위)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약칭하여 적용범위 대한 법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도 국제협약의 보안기준에 따라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도 포함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3)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SOLAS)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해상보안 기준(ISPS Code)을 반영하여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됨
- 나.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도 및 법체계 정비(제22조 삭제, 안 제31조의2 신설)
 - 1) 제2장(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에서 제22조(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등)를 삭제